

의안번호	제 99 호
의결년월일	1999. (제 회)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8. 4.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
----------	----

제출년월일 : 1999. 8. 4.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범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불필요한 제한 규정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정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2. 주요골자

-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는 융자 횟수와 기간을 불필요하게 제한한 규정으로써 삭제
- 동 조례 제11조, 제12조는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와 중복되었거나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

3. 참고사항

- 관련법조항
 - 충청남도 도로 30522 ~ 700('89. 9. 25)호 준칙
 - 서산시 보조금관리조례
- 입법예고 : 해당없음

서산시조례 제 호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개
행	정
안	안
<p>제5조(음자추천신청) ①(생략)</p> <p>②<u>음자금의 추천신청은 1가구1인1회에</u> <u>한하는 것으로 한다.</u></p>	<p>제5조(음자추천신청) ①(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8조(보조기간) <u>음자금에 대한 이자</u> <u>보조금의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u> <u>한다.</u></p>	<p><삭제></p>
<p>제11조(이자납부독촉) <u>시장은 음자받은</u> <u>자가 3월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을</u> <u>때에는 이자를 납부하도록 독촉한다.</u></p>	<p><삭제></p>
<p>제12조(음자금및보조금의 환수) <u>시장은</u> <u>생계자금을 음자받은 자가 다음</u> <u>각호의1에 해당 할 때에는 음자금을</u> <u>환수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u> <u>또는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u> <u>수 있다.</u></p> <p>1. <u>음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u> <u>사용한 때</u></p> <p>2. <u>음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u> <u>노점상 행위를 할 때</u></p> <p>3. <u>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u> <u>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u></p>	<p><삭제></p>